

의안번호	제2869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11. 14.

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6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4.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한 「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 - “2024년 12월 31일” (현행)→“2029년 12월 31일”(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365(2024.8.29.)호]

라. 기 타

- 1) 기획예산담당관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
· 원안가결[기획예산담당관-12834(2024.8.28.)호]

2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1402호

가) 예고기간: 2024.8.30. ~ 2024.9.19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5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.

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건축개발과장 정 상 호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